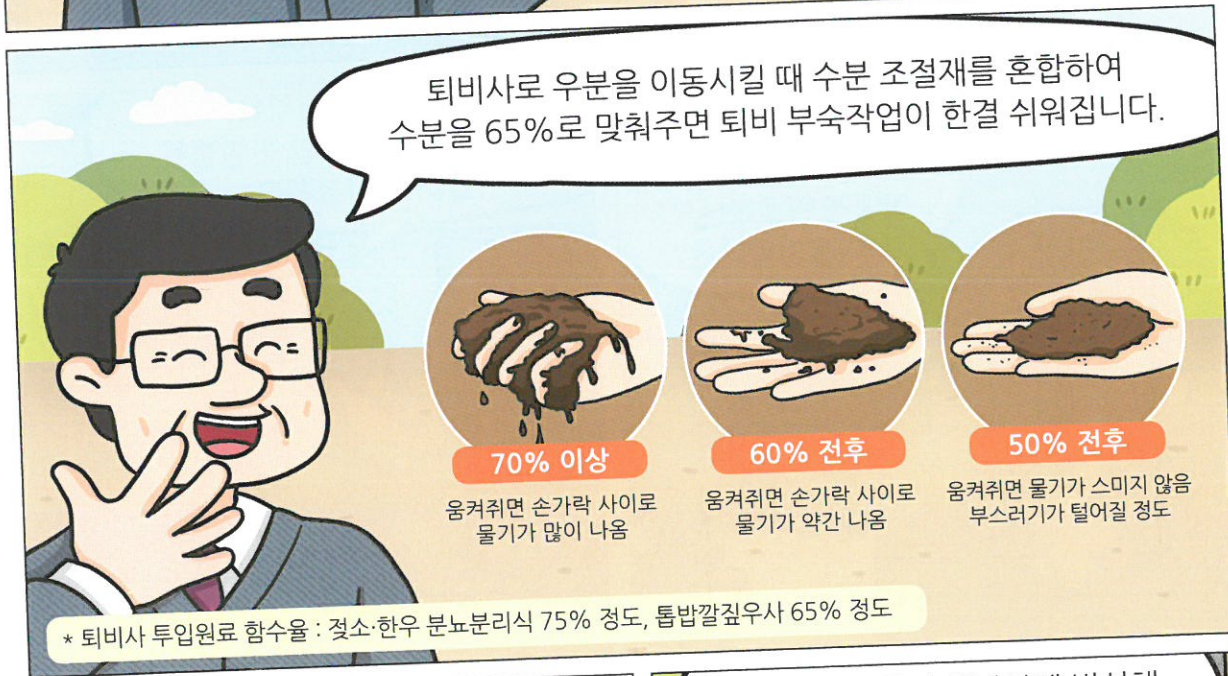


축산농장의
퇴비 부숙도 관리
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!











육안판별법은 농가에서 부숙도 관리를 위한 방법입니다.
가축분뇨법에서는 허가대상 농가는 **6개월에 1회**, 신고대상은
1년에 1회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업진흥기관에
의뢰하여 부숙도를 분석해야 하고,
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해요.



부숙도 검사는 농장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밀봉해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송하면 된답니다!

*직접 방문도 가능

부숙도 검사

*농사로(www.nongsaro.go.kr)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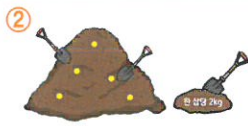
*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부숙도 무상검사가 가능('20년 3월 이후)

성분검사용 시료채취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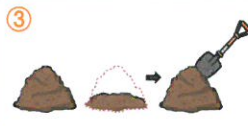
퇴비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갈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그림의 방법으로 채취



① 퇴적장에 저장한 부숙된 퇴비를 교반한다
(시료채취 작업은 이물질이 없는 바닥이나, 갈판을 깔고 실시)



② 퇴비 더미 중 5~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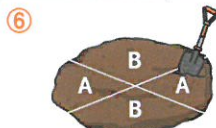
③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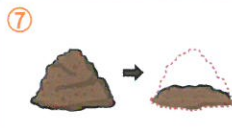
④ 쌓여진 원추를 정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한다



⑤ 평평하게 놓인 퇴비를 선형으로 4등분한다



⑥ 대각으로 A와 A를 선택하고 B와 B를 버린다



⑦ ③~⑥의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한다



⑧ 채취한 시료는 용기 또는 비닐봉지(지퍼팩 등)에 넣고 밀봉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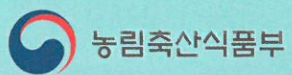
성분검사 주기

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,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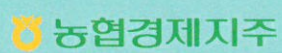
반드시
기억하세요!

- ▶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내 검사기관에 운송
- ▶ 시료에는 채취날짜, 시료명, 주소, 시료내역 등을 기재
- ▶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하고, 열이나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
- ▶ 시료성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7~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, 불가피한 경우 온도를 20℃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

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협경제지주



축신환경관리원

Institute of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